

# 인천대학교 공결 관련 안내(교원용)

## 1 공결 대원칙

- ▣ 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지침」 제3조④에 따라, 예비군훈련 및 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공결 인정 여부는 강의 담당 교원 재량에 따름
- ▣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▣ 학기당 공결 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  
※ 병역관계 및 취업자 공결 예외

## 2 공결제도 주요 변경사항

- ▣ 공결 신청 전산화 시행(2025-1학기~)
- ▣ ‘생리공결제’ 도입(2025-2학기~) : 월 1회(증빙서류 불요)
- ▣ 「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·보강 관리 지침」 제2조(공결사유 및 기간)

공결 사유	결석 허용 기간	
○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	참가 기간	
○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	해당 기간	
○ 경조사로 인한 결석 - 본인 결혼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- 본인 출산 - 배우자 출산 - 배우자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	· 7일 · 1일 · 20일 · 5일 · 7일 · 5일 · 3일 · 3일 · 3일	
○ 입원 및 치료(진단서 제출, 출석불가기간 명시)	4주 이내	
○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(증빙불요)	월 1일	
○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	해당 기간	
○ 학과 주관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시험(전시 및 공연 포함)	해당 기간	
○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※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	해당 기간	
○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	취업자	11주
	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·면접 채용 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	해당일
○ 산업체 출장(계약학과)	과목별 수업시수의 10% 이내	
○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	행사 기간	

### 3 공결 승인 방법

메뉴 위치: [통합정보→학사행정→수업→출석관리→출석인정승인]

- ① 신청 학생별 공결 사유 및 증빙자료 확인
- ②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여부 결정('승인'/'반려')
  - 생리공결 외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, 증빙자료 다음 페이지 참고
- ③ '승인'시 자동으로 출결시스템 반영, '반려'시 간략한 사유 명시



### 4 휴·보강 계획 신청 시 기존 일정에 공결 신청이 있을 경우

- 기존 일정에 공결 신청이 있을 경우, 휴·보강 신청 시 '공결신청 반려확인'창 팝업
- '일괄반려' 처리 후 휴·보강 신청 완료되며 기존 일정 공결 신청은 취소됨(승인상태 무관)



- 학사과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결 사유 증빙서류입니다.
- 출결은 담당 교원의 재량으로, 아래 증빙서류는 필수사항은 아니며,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증빙서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도 악용 방지 및 교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증빙서류는 필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.

### ▣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

- 첨부서류
  -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포스터 등)
  -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
  -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

### ▣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(공결 인정 필수항목)

- 첨부서류
  - 교육훈련소집필증(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  -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  -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※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

### ▣ 경조사로 인한 결석

- 첨부서류
  - 본인결혼: 웨딩홀 계약서·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 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: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  - 본인 출산: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  - 배우자 출산: 가족관계증명서,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  -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  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  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  -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부모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 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
### ▣ 입원 및 치료

- 첨부서류
  -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
    -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
    -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

### ▣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

- 학기 중 전역하여 선복학 후 개강 2주까지의 수업을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
- 첨부서류: 전역예정증명서

**▣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시험(전시 및 공연 포함)**

-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,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
-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- ※ 외부 기관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(스태프, 기자 등)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,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.

**▣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**

- 별도 서류 및 공결 신청 필요 없음(자동처리)

**▣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**

가. 취업자 출석인정원(홈페이지) 작성 및 아래 증빙자료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결재, 학과 원본 보관  
나.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사본 첨부→ 담당교수 승인/반려

- 취업자: 취업증빙서류
  - 재직증명서
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- 근로계약서
  - 상기 서류 외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1인 창(사)업자(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)
  - 사업자등록증명원
  -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  -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프리랜서(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)
  - 고용계약서
  -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  -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·채용시험 등 응시: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

**▣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**

- 첨부서류
  - 행사참가 확인서 혹은 공결 협조문